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류호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4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6.

발 의 자 : 류호정 · 이수진^비 · 강성희
용혜인 · 김주영 · 배진교
이은주 · 허숙정 · 강은미
장혜영 · 심상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고, 문화재청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,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위반으로 4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, 법적 근거의 미비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·보건

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).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3호까지의”를 “제3호까지 또는 제3호의2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사기관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)	제25조(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)
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,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제3호까지 또는 제3호의2의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의2.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